# 정보시스템 관리세칙

제 정 2006. 2. 17 개 정(1) 2011. 4. 6 개 정(2) 2012. 4. 2 개 정(3) 2014. 8. 9 개 정(4) 2016. 10. 4 개 정(5) 2020. 9. 29 개 정(6) 2023. 3. 22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컴퓨터에 의한 업무처리체계(H/W 및 S/W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의 개발, 운영,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내규에 따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- ②이 세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장(이하 '주관부서장'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용어의정의)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정보시스템"이라 함은 컴퓨터에 의한 업무처리체계(H/W 및 S/W를 포함하는 개념)를 말한다.
  - 2. "개발" 이라 함은 업무를 정보시스템화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
  - 3. "운영"이라 함은 시스템의 조작 및 자료의 처리, 관리 등 정보시스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.
  - 4. "주관부서장"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.
  - 5. "소관부서장" 이라 함은 정보시스템화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.
  - 6. "정보기기"라 함은 다음과 같다.
  - 업무용 서버(Server)와 이에 연결 되어서 기능을 발휘하는 기기 및 탑재된 소 프트웨어

- PC와 이에 연결 되어서 기능을 발휘하는 기기 및 탑재된 소프트웨어
- 데이터 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어서 기능을 발휘하는 기기 및 탑재된 소프트 웨어
- 7. "휴대용 저장매체"라 함은 디스켓, 외장형하드디스크(HDD), USB메모리, CD(Compact Disk), DVD(Digital Versatile Disk) 등 자료를 저장하고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.
- 8. "개인정보보호책임자"이라 함은 공사 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.

#### 제2장 정보시스템 추진위원회

- 제4조(설치목적 및 기능) ①정보시스템업무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추진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  -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  - 1. 중장기 정보화계획의 수립
  - 2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구성)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1. 위 원 장 : 경영관리부문장
- 2. 위 원 : 관련 부서장,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②위원회의 사무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6조(운영방법) ①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.

- 1.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시
- 2. 공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, 개발, 정보기기의 도입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- ②위원장은 필요시 관계있는 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제3장 계획

제7조(중장기 정보화계획) ①주관부서장은 정보기술 변화와 공사의 중장기 경영계

- 획에 맞추어 중장기 정보화계획을 수립한다.
- ②중장기 정보화계획은 사장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 다만, 공사의 중장기 경영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주관부서장은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④중장기 정보화계획 중 공사의 중장기 경영계획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변경할 수 있다.
- 제8조(재해복구계획) ①주관부서장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전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백업, 복구절차, 인원 등에 대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한다.
  - ②재해복구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주관부서장은 관련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개발 및 운영

- 제9조(개발) ①업무별 소관부서장(이하 "소관부서장"이라 한다)은 정보시스템화해야 할 대상업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후 요건정의를 실시하고,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개발을 의뢰한다.
  - 1. 개발추진 배경
  - 2. 정보시스템화 필요성, 효과분석
  - 3. 업무처리개요(업무흐름도, 회계처리, 계산식, 보고서, 처리자격등급 등)
  - 4. 업무량(사용자수 및 거래건수)
  - ②정보시스템화 대상업무 소관부서장은 주관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- 1. 정보시스템 개발자에게 개발업무 설명
  - 2. 소관부서 직원의 파견 등 개발 참여
  - 3. 기타 필요한 사항
  - ③소관부서장이 독자적으로 정보시스템화 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장의 합의를 거쳐 자체 개발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정보기술체계, 개발자 선정 등에 관하여 주관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.
  - ④개발방법론, 표준화 및 개발단계별 산출물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다.

- 제10조(개발절차) 업무를 정보시스템화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. 다만, 개발규모가 작을 때에는 일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  - 1. 분석
  - 2. 설계
  - 3. 프로그램 작성
  - 4. 테스트
  - 5. 이행(완료)
- 제11조(소관부서의 역할과 책임)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변경 요청
  - 2. 개발 및 변경대상 업무의 요건정의
  - 3. 개발과정의 산출물 검증
  - 4.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테스트 결과 확인
  - 5. 개발시스템 및 데이터 이행 확인
- **제12조(주관부서의 역할과 책임)**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부서 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
  - 2. 소관부서 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지원
  - 3.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테스트
  - 4. 데이터를 포함한 시스템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
- 제13조(운영) ①주관부서장은 이행된 업무의 유지보수 등 정보시스템을 운영·관리한다. 다만, 제9조 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소관부서장이 운영·관리할 수 있다.
  - ②소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업무변경사항에 대하여 요건정의 및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외주용역 및 업체선정) ①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주용역으로 할 수 있다.
  - ②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외부 전문업체의 용역이 필요할 경우, 용역 업체의 선정은 계약세칙에 의한 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③제안평가는 "기술제안 평가표"를 작성하여 실시하며, 기술제안 평가표는

- 『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(정부고시 "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")』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.
- 제15조(자료의 관리) ①공사의 업무에 대한 자료의 소유권한과 입력관리책임은 소관부서장이 갖는다.
  - ②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- 제16조(데이터 수정) ①데이터의 수정은 프로그램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소관부서의 정당한 요청 또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정한다.
  - ②소관부서의 수정요청시 주요 데이터의 경우 적정성 여부 검증 후 수정토록 한다.
- 제17조(데이터의 수정요청) 소관부서는 데이터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의 "시스템 작업요청서"를 통해 데이터 수정을 요청한다.
- 제18조(정보기기의 관리) 정보기기를 설치·이용하고 있는 소관부서장과 주관부서 장은 동 기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정보기기 배치요청) 정보기기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 은 전자결재시스템의 "정보기기 구입의뢰서"를 통해 주관부서장에게 해당 기기의 배치를 요청한다.
- 제20조(타당성 검토) 주관부서장은 요청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처리한다.

#### 제5장 정보보안

- 제21조(보안성 검토) ①주관부서장은 정보기기 도입 및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성을 검토한다.
  - ②소관부서장이 정보시스템을 개발·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 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정보보안) ①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거나 외부

침입자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주관부서장은 정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소프트웨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제23조('사이버보안진단의 날' 운영) ①주관부서장은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'사이버보안진단의 날'로 지정·운영한다.
  - ②주관부서장은 '사이버보안진단의 날'에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와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 취약 여부 등을 진단, 문제점을 발굴 개선한다.
- 제24조(PC 보안관리) ①PC사용자는 PC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다.
  - ②PC사용자는 비인가자가 PC를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1. 부팅, 화면보호 등 비밀번호 사용
  - 2.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
  - 3. 백신 및 PC용 침입차단시스템 등 운용
  - 4. 운영체제 등 최신보안 패치 유지
  - 5. P2P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
  - ③주관부서장은 PC반납시 하드디스크를 초기화 하여야한다.
  - ④주관부서장은 PC고장으로 인하여 외부에 수리를 의뢰할 경우,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는 백업 받은 후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초기화 하여야 한다.
  - ⑤PC사용자는 PC의 시스템 자원(폴더, 파일 등)에 대한 공유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에 의해 공유할 경우에는 암호설정 등의 보안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⑥개인소유의 PC(노트북 PC 등)는 부서 내부로 반입 또는 반출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보안조치 한후 반입 또는 반출 할 수 있다.
  - ⑦인터넷 전용 PC의 경우, 문서 편집이 불가능하도록 읽기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·운용 하여야 한다.

제25조(보호구역 지정)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.

- 1. 컴퓨터실
- 2. 통신실

- 3. 백업센터
- 4. 기타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
- 제26조(보호구역 출입자 통제) 주관부서장은 출입자격등급 보유자 이외의 보호구역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- 제27조(보호구역 출입허가) 보호구역 출입자격등급 미 보유자가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구에 비치된 『보호구역 출입자 기록부』(양식1)에 출입시각 및 사유를 기술하고 주관부서장의 입회 하에 보호구역 내에 들어갈 수있다.

제28조(사용자계정 관리) 사용자계정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1. 사용자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.
- 2. 외부사용자의 계정은 유효기간을 설정한다.
- 3. 비밀번호가 없는 계정은 폐기한다.
- 4.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폐기한다.
- 5. 일정횟수이상 접속실패 시에는 사용을 중지한다.
- 제29조(사용자계정 신청) ①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전자결재시스템의 "시스템 권한신청서"를 통해 시스템구분, 계정의 종류(시스템 계정, DB 계정)를 명시하여 신청한다.
  - ②출장 등의 사유로 외부에서 공사 시스템(그룹웨어, 이메일 등) 접근이 필요한 경우, 전자결재시스템의 "시스템 작업요청서"를 통해 VPN 계정을 요청한다. 단, 기간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
- 제30조(사용자계정 부여) 주관부서장은 "시스템 작업요청서"에 명기된 사용자계정을 부여한다. 단, 그룹웨어 및 이메일 등의 시스템은 입사시 자동으로 부여한다.
- 제31조(사용자계정 삭제) ①임직원의 담당업무 변경 또는 이동 등의 인사발령 시 주관부서장은 해당 사용자계정을 삭제 한다.
  - ②주관부서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정이나,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강제로 삭제할 수 있다.
- 제32조(비밀번호 초기화) ①계정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초기화를

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②주관부서장은 요청자의 사용자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계정사용자는 초기화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한다.

#### 제33조(비밀번호 사용 및 관리) ①비밀번호 제정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1. 추측할 수 있는 단어 사용 금지
- 2. 간단한 문자나 숫자의 연속사용 금지
- 3. 사전에 있는 단어 사용 금지
- 4. 숫자와 문자,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사용
- 5. 사용자계정과 동일한 비밀번호 사용금지
- ②비밀번호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등 타인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비밀번호 항목은 암호화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한다.
- ④비밀번호 변경내역(변경전 비밀번호, 변경일시 등)을 기록·유지하여 최근 3회 동안 변경 전 비밀번호 재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⑤비밀번호는 90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되지 않은 경우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⑥정보시스템 접근시 비밀번호 저장기능 사용을 금하며,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34조(사용자계정 재개) 장기간 미사용 등으로 사용허가가 중지된 계정의 사용 재개를 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처리 절차는 비밀번호 초기화 절 차에 준한다.
- 제35조(소프트웨어보안) ①모든 PC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만이 설치되고 사용하여 야 하며, 정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원본의 저장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
  - 2.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 또는 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
  - ②허가 없이 타인의 단말기에 접근하거나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악의의 프로그램은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- 제36조(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) ①바이러스 예방을 하기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휴대용 저장매체는 항상 쓰기 방지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한다.

- 2. 저장매체를 이용한 자료 및 파일 복사시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 한다.
- 3. 휴대용 저장매체의 불법복사를 금지하여야 한다.
- 4. 개인용 컴퓨터 내에 항상 최신 버전의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한다.
- 5.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데이터 손상에 대비하여 수시 혹은 정기적으로 데이터의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6. 주관부서장은 바이러스 진단장치를 이용하여 서버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.
- 7.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에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용 정보시스템에 설치한다.
- ②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주관부서장은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한다.
- 1. 바이러스 감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된 시스템 사용중지
- 2. 바이러스에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퇴치
- 3. 바이러스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사용자에게 관련 사실 및 보안조치사항을 즉시 전달
- 4. 바이러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 분석 및 예방 조치 수행
- 제37조(원격근무 보안관리) ①원격근무 지원자는 『원격근무 보안서약서』(양식2) 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원격근무 승인을 득한 후,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 시 해킹을 통한 업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수행 전 최신 백신으로 원격근무용 PC를 점검하고 원격근무 PC에 업무자료 저장·보관을 금지한다.
- 제38조(전자우편 보안) ①전자우편 사용자는 보안조치 없이 전자우편을 이용한 비밀 및 중요자료 전송을 금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의 경우 열람하지 말고 삭제한다.
  - ②주관부서장은 웜·바이러스, 스팸 메일 등으로부터 전자우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설치, 스팸 필터링 기능 도입 등 보안대책을 강구한다.
- 제39조(휴대용저장매체 사용제한) ①등록된 휴대용저장매체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목적 이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  - ②주관부서장은 소속직원에게 공지·교육을 통하여 휴대용 저장매체의 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.

- 제40조(휴대용저장매체 관리운영) ①휴대용저장매체는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휴대용저장매체 반·출입을 승인할 수 있으며 기간 은 한 달 이내로 제한한다.
  - ③휴대용저장매체의 분실, 고장, 또는 훼손 시 주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주관부서장은 해당 휴대용저장매체의 사용을 중지시킨다.
  - ④휴대용저장매체의 비밀번호 분실 시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저장매체의 초 기화 후 재등록하도록 한다.

#### 제6장 개인정보보호

- 제41조(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)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·운영하고,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한다.
- 제42조(개인정보처리방침)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  - 1.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전화번호와 그 밖의 연락처
  - 2. 개인정보의 수집, 처리, 파기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43조(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) ①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 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입출력자료·전산기기·전산실 등의 관리에 관 하여 안정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  - ②홈페이지를 구축·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 도록 관리적·기술적 조치를 취한다.
- 제44조(개인정보의 수집) ①채용 등의 개인정보 수집 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친 후에 수집한다.
  - ②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, 목적 및 이용범위,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안내한다.

제45조(준용)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정부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
- 1. 「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」
- 2. 「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」
- 3. 기타 관련법령

#### 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. 2.17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1. 4. 6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. 4. 2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. 8. 20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. 10. 4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6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세칙은 2020. 9. 29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7)

제**1조(시행일)** 이 세칙은 2023. 3. 22 부터 시행한다.

# 보호구역 출입자 기록부

일자	소	속	직위	성	명	날인	<u>Q</u>	무			입 회 자	
_ ,		,	,		J			·	부 터	까 지	ę	j

#### 원격근무 보안서약서

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- 1. 나는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 한다.
- 2. 나는 원격근무 중 작성·저장·열람·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.
- 3. 나는 원격근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업무목적에만 활용하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.
- 4. 나는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.

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사번 \_\_\_**제공동의** 성명 인

- □ 개인정보 취급동의
- ※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